

문서번호	주택관리과-345
결재일자	2016.1.6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주택관리담당	주택관리과장	도시환경국장		
지영호	최연우	최태규	01/06 최성태		
협 조	안전재난관리담당 김용환				

「2015년 겨울철 종합대책」 동절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보고



2016. 1.

도시환경국
주택관리과

「2015년 겨울철 종합대책」

동절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

동절기 대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폭설 및 동파, 화재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I 점검근거

- 『주택법 시행령』 제65조(공동주택의 안전점검)
- 『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』 제25조의2(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예방조치)
-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-19496(2015.11.12.)호 : 2015년 겨울철 종합대책
-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-20554(2015.12.3.)호 : 공동주택 동절기 대비 철저

II 점검현황

- 점검기간 및 대상
 - 점검기간 : 2015.12.9.~2015.12.23.(15일간)
 - ※ 2015년 겨울철 종합대책 기간 : 2015.11.15. ~ 2016.3.15.(4개월)
 - 점검대상 : 관내 공동주택(134개 단지, 907개 동) -붙임3.문서 참조
 - ※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47개 단지중 27개 단지는 「2015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」 당시 안전점검 하였으므로 금번 동절기 대비 점검에서 제외함

(단위 : 단지)

구 분	계	관리등급				비고
		A급	B급	C급	D,E급	
합 계	134	46	85	1	2	
의무관리 대상	114	29	84	1	-	
임의관리 대상	20	17	1	-	2	

- **점검방법(점검자) :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실시**
 - D,E급 재난위험시설물 : 담당 공무원 현장점검
 - 담당 공무원 : 시설7급 이재훈, 시설9급 지영호
 -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: 관리주체에서 자체점검
 -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: 외부 전문가(건축사 이용석) 현장점검
- **주요 점검사항**
 - 구조물의 전반적인 외관, 변형 상태 점검
 -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
 - 담장, 축대, 옹벽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
 - 주변지역의 공사 등 위험요인 점검
 - 제설장비 배치, 동파예방 등 동절기 대비 조치사항 점검

Ⅲ 점검 결과

- **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**
 - 점검결과 총 134개의 단지 중 15개 단지가 보수·보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, 그 외 단지는 별도 특이사항 없음(붙임1,2.문서 참조)

구 분	점검개소	점검결과 지적건수		지적사항 관리주체 통보
		계	균열, 보수·보강필요 등	
합 계	134	15	15	15개 단지 모두 통보
의무관리 대상	114	10	10	
임의관리 대상	20	5	5	

- **점검결과에 따른 안전등급별 관내 공동주택 수**
 - 안전등급별 관내 공동주택 수

구 분	단지 수	안전등급			
		A급	B급	C급	D,E급
공동주택 분야	161	47	101	11	2

IV 향후 조치계획

- 경미한 사항 및 위험요인 등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공동주택의 소유자·관리자에게 보수·정비하도록 통보
-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건물(E급)에 대하여 지속적인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, 입주자에게 대피명령 조치
- 외부 전문가 안전점검 노임 지출
 - 산출근거 : 2015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기준(특급기술자) 249,900원
 - 건축사 이용석 : 249,900(적용) × 1인 × 3일 = 749,700원
 - ※ 예산과목 : (정책사업)재해 및 재난예방과 복구능력강화, (단위사업)재난예방 및 안전관리, (세부사업)재난대응 수습능력 구축, (편성목)이주및재해 보상금, (통계목)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(시설물 안전점검비)

붙임 : 1. 의무관리대상 점검내용 1부.
2. 임의관리대상 점검내용 1부.
3. 동절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 목록 1부. 끝.